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30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

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정비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요건 및 대상을 확대하며,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더라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 수행이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준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직무의 실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봄.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재해예방, 재할 및 직무의 복귀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마련,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 건강안전협의회 구성·운영,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계획체계 구축,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공무원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재해예방 사업 등 재원 마련의 근거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보건안전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규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정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규범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임.

1)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재해예방 관련 개별 법률 현황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근거법률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근무여건 개선,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 등 -정신건강 등 검사(경찰병원 등 이용), 특수건강진단 등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 근무여건 개선,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관리, 재원 조달·운영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교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의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센터 지정